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2. 7.
제 출 자 목 포 시 장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 확대(안 제6조)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함.

나.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분담, 주민 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안 제7조)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을 허용함.
- 시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다.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및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안 제10조)

- 사용료 등은 "사용료" 와 "수강료" 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함.
- "사용료" 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
-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함.

-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함.
-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함.

-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함(반기 경과후 20일 이내)
- 시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라.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안 제11조)

-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 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마.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내역의 보고시한 명시 (안 제14조)

- 예산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 까지 연 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 제1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함.
-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함.
- 위원분포의 균형과 대표성을 위해 어느한 계층에서 1/3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함.
-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 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타 :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련부서의견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002. 6. 10 ~ 6. 30 (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9. 사전협의사항 : 해당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2002. 3. 7)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2002. 3. 7, 자제13101-14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시설 등의 계획”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로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

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제3항중 “시설등의”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중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운영 등에”를 “운영에”로,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심의”를 “의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운영 등에”를 “운영에”로 하며,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 of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를 탈퇴할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중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를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④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 및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료

2. 수 강 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감면율	비 고
문화,취미, 교양강좌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6,000원 이하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5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10시간이하	35,000원 이하	17,500원 이하	
생활체육	5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12,5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17,50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별로 개설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생 략> <p>제4조 (설치등) ① <생 략>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p> <p>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주민자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등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행사취미교실, 생활체육등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시민교육 기능 	<p>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p> <p>제2조 (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 3. <현행과 같음> <p>제4조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제5조 (기능) ①자치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등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u>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u></p> <p>4. <u>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u></p> <p>5. <u>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 자치기능</u></p> <p>② <생 략></p> <p>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p> <p>① <생 략></p> <p><u>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④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u>시설등의 계획</u>을 수립하여야 한다.</p>	<p>3. <u>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u></p> <p>4. <u>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u></p> <p>5. <u>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u></p> <p>6. <u>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p> <p>① <현행과 같음></p> <p><u>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u>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p> <p>②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 (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p> <p>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p> <p>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p>	<p>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 (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p> <p>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이용등) ① ~ ② <생 략>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u>시설 등</u>의 이용에 대하여는 <u>사용료</u>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생 략> ⑤ <<u>신 설</u>></p>	<p>제11조 (이용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u>사용료</u>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 -----. ④ <현행과 같음>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 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4조 (보고) ①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u>1월전까지</u> 다음해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 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보고하 여야 한다.</p>	<p>제14조 (보고) ①----- 3월전까지 ----- -----. ②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사용료</u> 등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지 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반기 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제15조 (설치) ----- 운영에----- ---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p>
<p>제15조 (설치) 자치센터의 <u>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u> 동별 주민자치위 원회를 둔다.</p>	<p>제16조 (기능) ①----- -----의결--.</p>
<p>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4.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기타 자치센터의 <u>운영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신 설></p> <p>③ <신 설></p> <p>제17조 (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해당동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p>	<p>5.----- 운영에 -----</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③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_</p> <p>제17조 (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p> <p>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p> <p>2.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 자</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 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p> <p>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p> <p>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p>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② <생략></p> <p>③ <신설></p> <p>④ <신설></p> <p>제20조 (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p>	<p>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20조 (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를 탈퇴할 경우</p> <p>5.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u>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u></p> <p>제2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신설></p> <p>④ <신설></p> <p>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3조 (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p> <p>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를 탈퇴할 경우</p> <p>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6.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u></p> <p>제21조 (회의) ①----- ----- ----- -----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p> <p>④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2조 (회의록) --- 간사는 ----- ----- -----.</p> <p>제23조 (실비보상등) <u>위원 및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별표]

주민자치센터사용료및수강료

1.기본시설사용료:무료

2.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감면율	비 고
문화,취미, 교양강좌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6,000원 이하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5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10시간이하	35,000원 이하	17,500원 이하	
생활체육	5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12,5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17,50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